

베트남의 환경보호법제 개정 동향

I. 서언

현재 동남아시아에서의 환경법 정비 및 환경정책 수립은, 1967년 창설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발전된 형태인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는 환경분야에 있어서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환경법은 대체로 ① 역사적인 법전통이나 공동체가 환경보전에 있어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② 법제도 전반이 취약하고 환경 관련 국제기구나 선진국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③ 민주화와 분권화가 진행될수록 환경보호가 강조되고, ④ 환경행정과 법적 적용을 막는 사회적 요인이 존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¹⁾ 한편, 환경법 정비착수시기를 기준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선발그룹과 후발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²⁾ 선발그룹에는 싱가포르(1969년 환경공중위생법), 태국(1972년 環境質保全向上法), 말레이시아(1974년 環境質法), 필리핀(환경법전, 1977년 환경정책법), 인도네시아(1982년 환경관리보호법) 등이 속하고, 후발그룹에는 캄보디아(1996년 환경보호법), 라오스(1999년 환경보호법), 미얀마(2012년 환경보호법), 베트남(1993년 환경보호법)이 속한다.³⁾ 선발그룹은 환경기본법의 초기 제정을 1990년 이전에 끝냈으며, 그 후에는 환경기본법의 재검토나, 대규모 법개정을 실시하거나, 주관 환경행정기관의 조직을 바꾸거나, 환경분쟁 처리시스템의 확립 및 지방 환경행정이나 조례의 정비를 추진하기도 한다. 반면, 후발그룹은 뒤늦게 환경기본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일부는 기본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거나, 중앙의 환경행정기관을 신설하는 등의 단계에 있다.⁴⁾ 베트남은 환경법 분야에 있어서 아세안의

1) 作本直行, “アジア環境法 - 東南アジアの環境法政策を中心に -”, アジアの環境法政策と日本, 商事法務, 2015, 5-11면 참조.

2) 作本直行, 위의 논문, 12면 이하 참조.

3) 후발그룹에 속하는 국가들이 환경법 정비작업에 나선 계기가 된 것은 1992년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였다(作本直行, 위의 논문, 12면).

4) 作本直行, 위의 논문, 13면.

후발그룹에 속하지만 그 중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⁵⁾ 전술한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의 환경분야에서 기후변동에의 대응과 그 영향에 관한 지도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비록 환경법 제정에 착수한 시기는 늦었지만, 경제-사회분야의 발전에 따라 환경정책과 환경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오고 있다.

II. 베트남 환경보호법제의 체계

2013년 베트남 헌법 제43조는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은 청정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권리 및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는 환경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천연자원을 효과적·지속적으로 관리·사용하며, 자연·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재해예방과 대책을 주도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베트남 헌법 제63조 제1항). 더 나아가 국가는 환경을 보호하고 신에너지·재생 에너지를 발전시키고 사용하는 모든 활동을 장려한다(베트남 헌법 제63조 제2항). 또한 베트남 헌법은 환경

책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즉,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천연자원을 고갈시키며,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킨 단체·개인은 엄격히 처리되고, 손해를 회복 및 배상할 책임을 진다(베트남 헌법 제63조 제3항). 이러한 헌법적 근거에 따라 환경보호법이 제정·시행되었는데, 베트남에서 처음 환경보호법이 시행된 것은 1994년이다.⁶⁾ 이 법은 1993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여 1994년 1월 10일 공포되었으며, 7개 장, 55개 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후 2005년 개정되었는데, 2005년 개정 환경보호법은 15개 장 136개 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2005년 개정 이후에도 부처간의 불분명한 권한과 책임의 분담, 실효성 없는 규제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진 환경정책과 사회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4년 개정된⁷⁾ 현행 ‘환경보호법(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⁸⁾

현행 환경보호법의 시행을 위하여 다수의 하위 법령들이 제정·시행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정부의정 등의 하위법령들은 다음과 같다.⁹⁾

- 5)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의 법전통 때문인지, 법률이 정책 차원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나, 정부의정이 이른바 법률 차원에서 규정해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향이 보인다(作本直行, 위의 논문, 15-16면).
- 6) 1993년 제정되어 1994년 시행된 환경보호법에 관하여는 최철영, 환경보호법제 비교연구, 법제연구원, 1999 참조.
- 7) ジェトロ・ハノイ事務所, 改訂環境保護法(2015. 01. 01施行)等の環境法規の動向について, 2015, 2면.
- 8) 2014년 6월 23일자 55/2014/QH13호 법률.
- 9) 정부의정이란 법률, 국회의 의결, 국회 상무위원회의 법령과 의결, 국가주석의 영과 결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정한 하위규범이다(베트남 법규규범체계에 관하여는 이재열, 베트남 법규규범문서 법제에 관한 소고, 2012년도 통합법제연구보고서, 법제처, 2012, 73면 이하 참조).

- 환경보호구획, 환경전략평가, 환경영향평가와 환경보호계획에 관한 의정(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quy hoạch bảo vệ môi trường, đánh giá môi trường chiến lược, đánh giá tác động môi trường và kế hoạch bảo vệ môi trường)¹⁰⁾
- 환경보호법의 일부 조항 시행의 세부 사항에 관한 의정(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¹¹⁾
- 환경손해확정에 관한 의정(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xác định thiệt hại môi trường)¹²⁾
- 식물보호와 검역법의 일부 조항의 세부 사항에 관한 의정(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bảo vệ và kiểm dịch thực vật)¹³⁾
- 천재지변 예방·대응기금의 설립과 관리에 관한 의정(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thành lập và quản lý quỹ phòng, chống thiên tai)
- 환경보호법 시행 및 전개에 관한 지시(Chỉ thị về việc triển khai thi hành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¹⁴⁾
- 배수와 하수처리에 관한 의정(Nghị định về thoát nước và xử lý nước thải)¹⁵⁾

III. 베트남 환경보호법의 구조와 내용

1. 환경보호법의 구조

베트남에서 환경보호의 주관행정기관은 자원환경부(Bộ Tài nguyên và Môi trường)이고, 환경법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법은 환경보호법이다. 현행 환경보호법은 20개 장 17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의 환경보호법(2005년)이 15개 장 136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던 것과 비교하여 규정의 범위와 내용이 확충되었다. 우리나라의 환경보호법제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개별환경법으로 규율되고 있는 사안도 베트남에서는 환경보호에 있어서 기본법에 해당하는 '환경보호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베트남 환경보호법의 장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일반규정

제2장 환경보호기본계획, 전략적 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와 환경보호계획

제3장 천연자원의 개발 및 사용에 있어서의 환경보호

제4장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10) 2015년 2월 14일자 18/2015/NĐ-CP호 정부의정.

11) 2015년 2월 14일자 19/2015/NĐ-CP호 정부의정.

12) 2015년 1월 6일자 03/2015/NĐ-CP호 정부의정.

13) 2014년 12월 4일자 116/2014/NĐ-CP호 정부의정.

14) 2014년 8월 25일자 26/CT-TTG호 정부수상의 지시.

15) 2014년 8월 6일자 80/2014/NĐ-CP호 정부의정.

- 제5장 해양과 도서 환경 보호
- 제6장 물, 토양, 대기의 환경보호
 - 제1절 하천구의 환경보호
 - 제2절 기타 수원(水源)의 환경보호
 - 제3절 토양환경보호
 - 제4절 대기환경보호
- 제7장 생산·경영·서비스 활동에서의 환경 보호
- 제8장 도시·거주구역 환경보호
- 제9장 폐기물관리
 - 제1절 폐기물관리의 일반규정
 - 제2절 유해폐기물관리
 - 제3절 일반고형폐기물 관리
 - 제4절 폐수관리
 - 제5절 분진, 배기가스, 소음, 진동, 광선, 방사능 관리 및 검사
- 제10장 환경오염처리, 회복과 개선
- 제11장 환경기술규준 및 환경기준
- 제12장 환경관측
- 제13장 환경정보, 환경지표, 환경통계와 환경보고
- 제14장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의 책임
- 제15장 환경보호에 있어서 베트남조국전선, 정치-사회단체, 사회-직능단체

- 와 주민공동체의 책임
- 제16장 환경보호에 관한 재원
- 제17장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협력
- 제18장 환경에 관한 위반 행위의 감사(thanh tra)·조사(Kiểm tra)·처분 및 환경에 관한 분쟁·불복(khiếu nại) 및 고소(tố cáo)의 해결
- 제19장 환경에 관한 손해배상
- 제20장 시행규정

2. 주요내용

환경보호법은 환경보호활동,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수단과 근원, 환경보호에 있어서의 기관·단체·가족호(家族戶)와 개인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환경보호법 제1조 참조).¹⁶⁾ 환경보호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보호의 원칙(제4조)¹⁷⁾

베트남 환경보호법은 먼저, 환경보호는 각 기관, 단체, 가족호와¹⁸⁾ 개인의¹⁹⁾ 책임과 의무임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는 인간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

16) Revised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Vietnam Law & Legal Forum, 2014. 11, p.31.

17) 범명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현행 베트남 환경보호법을 가리킨다.

18) 베트남 법제상 구성원이 공동의 재산을 소유하는 동시에 농업, 임업 등의 생산영역에서 공동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제한적인 권리주체이다(베트남 민법 제106조 이하 참조).

19) 개인은 베트남 법제상 우리의 자연인에 해당하는 권리주체이다(베트남 민법 제14조 이하 참조).

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발전, 사회안전, 아동의 권리보장, 성별 평등의 추진,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발전, 기후 변화에의 대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환경보호는 합리적인 자원 이용과 폐기물의 감소를 기초로 하고, 국가의 환경 보호는 지역과 글로벌 환경과 관련되고, 국가의 주권, 안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환경보호는 국가의 규율, 자연의 특징, 문화, 역사, 경제 사회 발전 정도에 부합해야 한다.

환경보호활동은 항상 진행되어야 하고 환경오염·사고 및 악화를 신속히 방지하여야 하고,²⁰⁾ 환경구성요소를 이용하는 단체·가족·개인 이 환경에서 이익을 받는 경우 환경 보호에 재정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수익자 부담의 원칙). 그리고 환경오염사고와 환경 악화를 일으킨 단체·가족·개인은 법률규정에 따라 복구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기타 책임을 부담한다(원인자책임의 원칙).

(2) 금지되는 행위(제7조)

다음의 행위들은 엄격히 금지된다.

- 천연자원의 파괴·허가에 반하는 개발
- 법정 수확기(thời vụ)와 산출량(sản lượng)에 따르지 않고, 멸종시키는 수단(phương tiện)·공구·방법에 의한 생물자원의 개발

- 권한있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도록 규정된 응급·희귀 목록에 속한 각종 야생 동·식물의 개발·경영·소비
- 환경보호 기술규정에 맞지 않는 독극물, 방사성 물질, 폐기물, 기타 유해물질의 운송과 매립
- 환경기술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의 배출 및 독극물, 방사성 물질 기타 유해물질의 토양, 수원, 대기 중 배출
- 유해 화학물질·폐기물·검사되지 않은 미생물과 인간과 생물에 대하여 기타 유독 물질의 수원으로의 투입
- 독극물이나 악취를 포함한 연기·분진·가스의 대기 방출 및 환경기술 규격의 허용량을 넘는 전파·방사선·이온 화합물 방출
- 환경기술규격의 허용기준을 넘는 소음·진동
- 모든 형식에 의한 외국으로부터의 폐기물 수입 통관
- 검역을 통과하지 않은 동식물 및 허가 목록 이외의 미생물의 수입 통관
- 인간·생물·생태계에 위해를 야기하는 제품의 생산·경영과 기준 허용량을 넘는 독극물을 포함한 원료, 건설 자재의 생산·사용
- 자연유산과 자연보존구역의 파괴·침해 행위

20) 베트남 환경보호법상 환경보호활동(Hoạt động bảo vệ môi trường)이란 환경을 지키고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방지·억제하며, 환경 피해에 대처하고, 환경오염과 악화를 극복하며 환경의 회복·개선을 행하고 또한 환경을 바르고 아름답게 유지하면서 천연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하는 활동을 말한다(제3조 제3항 참조).

- 환경보호활동에 사용하는 시설·설비·수단의 침해
- 인간에 대한 환경의 특별한 위험정도에 따라 권한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금지구역으로 확정된 구역에서의 불법활동 및 생활
- 환경파괴행위의 은폐, 환경보호활동의 방해, 환경에 대해 악영향을 주는 정보 왜곡
- 환경관리규정에 반하는 권한 있는 자의 직무 및 권한의 이용, 월권행위 또는 무책임한 행위

(3) 환경에 관한 위반행위의 감사(thanh tra)·조사(Kiểm tra)·처분 및 환경에 관한 분쟁의 처리

1) 환경보호 조사 및 감사 실시의 책임(제159조)

자원환경부 장관은 법률의 규정 따라 전국의 환경보호에 대한 조사·감사의 실시를 지도한다. 또한 국방부장관,公安부 장관은 국방·안전에 관한 국가 기밀 범위 내의 시설·프로젝트·공사에 대해서 환경보호의 조사·감사의 실시를 지도한다.

성급 인민위원회 주석은 법률 규정에 따라 지방 환경보호의 조사·감사의 실시를 지도한다.

2) 위반의 처리(제160조)

단체·개인이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환경오염²¹⁾·환경악화²²⁾·환경사고를²³⁾ 야기하며, 다른 단체 및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환경보호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오염의 극복(khắc phục), 환경의 회복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기관·단체의 최고책임자, 간부 및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단체·개인에게 방해와 불편을 야기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자를 은폐하며 또는 환경오염·환경사건 발생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성질 및 위반정도에 따라 징계처리되거나 형사소추된다. 아울러 손해를 야기한 경우, 법률규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즉, 환경보호법에 환경보호법 위반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3) 환경에 관한 분쟁(제161조)

환경에 관한 분쟁의 내용에는 ① 환경구

21) 환경오염(Ô nhiễm môi trường)은 환경기술기준과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인간과 생물에 악영향을 주는 환경구성요소의 변화이다(제3조 제8항).

22) 환경악화(Suy thoái môi trường)는 인간과 생물에 악영향을 주는 환경구성요소의 질과 양에 관한 감소이다(제3조 제9항).

23) 환경사고(Sự cố môi trường)는 인간의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또는 환경오염·환경악화 또는 중대한 환경변화를 야기하는 자연의 변화이다(제3조 제10항).

성요소의 개발 및 사용에 있어서 환경보호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분쟁, ② 환경오염·환경악화 및 환경사고를 야기한 원인 확정에 관한 분쟁, ③ 환경오염·환경악화 및 환경사고의 처리책임·결과의 극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이 있다.

환경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구성요소를 이용한 단체·개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구성요소를 이용한 단체·개인이 당사자이다. 환경구성요소를 개발 또는 이용한 단체·개인과 환경오염·악화된 구역의 개조·회복의 책임 및 환경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단체·개인 사이의 분쟁에서는 각 단체·개인이 분쟁당사자이다.

환경에 관한 분쟁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규범에 대해서 환경보호법 제161조 제3항은 계약 외 민사분쟁해결에 관한 법률규정 및 관련된 법률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분쟁 당사자가 외국단체·외국인인 경우 베트남법이 분쟁해결을 위한 준거법이 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상의 환경에 관한 분쟁에서 일방 또는 복수의 당사자가 외국단체·개인인 경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법에 따라 해결된다. 단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체약국인 국제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61조 제4항).

(4) 환경에 관한 손해배상

1) 환경오염·환경악화에 따른 손해

환경오염·환경악화에 따른 손해는 환경의 기능·유익성의 감소 및 환경의 기능·유익성 감소의 발생 효과에 의한 사람의 생명·건강, 단체·개인의 재산과 합법적인 이익에 관한 손해를 포함한다(제163조).

2) 환경오염을 야기한 단체·개인에 대한 책임 처리의 원칙(제164조)

환경오염 및 환경오염에 의한 효과는 권한 있는 국가관리기관에 의해 적시에 연구·조사·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단체·개인의 환경오염·환경악화를 야기한 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시에 발견·처리되어야 한다.

개인 책임의 확정은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먼저 단체의 직접적인 최고책임자는 단체 자신의 활동에 관련있는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오염·환경악화를 야기한 단체·개인은 자신이 야기한 행위에 따른 효과 극복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개인이 단체에 의해 부여된 업무의 이행으로 환경오염·환경악화를 야기한 경우, 단체는 법률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4조 제3항은 단체의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와 개인의 업무수행행위에 따른 단체의 법적 책임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3) 환경손해배상의 책임보험(제167조)

국가는 보험경영기업이 환경에 관한 손해 배상책임보험을 이행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생산·경영·서비스 활동을 하는 단체·개인이 환경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한다.

환경에 큰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생산·경영·서비스 활동을 하는 단체·개인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환경손해배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즉, 큰 손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3. 2014년 환경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²⁴⁾

(1) 환경보호기본계획(Quy hoạch bảo vệ môi trường)의 신설

현행 환경보호법은 환경보호기본계획을 신설하여 이를 제2장 제1절에서 규정하고 있다(제8조 내지 제12조). 환경보호 기본계획(Quy hoạch bảo vệ môi trường)은 지속적인 발전을²⁵⁾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사회 종합발전계획과의 밀접한 관련 하에서 환경보호 처리시스템과 함께 환경보호기술

인프라 시스템을 보존·발전·성립시키기 위하여 환경을 지역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제3조 제21항). 환경보호기본계획은 국가 차원의 환경보호계획과 성(Tỉnh) 차원의 환경보호계획으로 구분된다.²⁶⁾ 또한 자연·경제-사회적 조건, 경제-사회·국방·치안의 발전전략 및 종합계획,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국가의 환경보호전략에 부합하여야 하고, 토지사용계획, 환경보호계획의 기본 내용과의 통일성을 담보하며, 환경보호법 제4조가 규정하는 환경보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환경보호기본계획에는 ① 환경영향평가·환경관리·환경변화와 기후 변화 예측, ② 환경구분, ③ 생물 다양성과 산림 환경의 보전, ④ 해양·島嶼·하천 유역의 환경 관리, ⑤ 폐기물 관리, ⑥ 환경보호기술인프라 및 환경관측시스템, ⑦ ② 내지 ⑥의 내용을 구현할 계획 지도, ⑧ 계획이행 재원의 확보, ⑨ 계획이행의 조직 내용을 포함한다.

국가차원의 환경보호계획 입안은 자원환경부가 담당하며, 성 차원의 환경보호계획 입안은 성 및 중앙직속도시의 인민위원회가 담당한다.

24) Revised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op.cit., pp.31-32 참조.

25) 지속가능한 발전(Phát triển bền vững)은 경제 성장, 사회적 진보의 확보와 환경 보호와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는, 현재의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 세대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발전을 말한다(제3조 제4항 참조).

26) 성(Tỉnh)은 베트남 지방행정단위로서 우리의 도에 해당한다.

(2) 환경영향평가(Đánh giá tác động môi trường)

베트남도 다른 아세안 국가와 마찬가지로 통상의 환경영향평가(EIA)를 채택하고 있으며(제18조 내지 28조), 또한 전략적 환경 평가(SEA)를 도입하고 있다(제13조 내지 제 17조).²⁷⁾ 환경영향평가란 프로젝트 진행시 환경보호수단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투자프로젝트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분석·예보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 제23항).

1)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국회, 정부, 정부수상의 결정권한에 속하는 사업, 자연보전지역·국립공원·역사-문화유적구역·세계유산구역·생물권보전구역·경관구역의 토지를 사용하는 사업,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 등 3가지로 구분된다(제18조).

2)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의 사업자는 스스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이행자문 단체에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법률상 책임을 진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준비 과

정에서 실시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결과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기재한다.

3)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2조).

① 사업경위, 사업자, 사업을 승인하는 권한기관, 환경영향평가 실시방법, ②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의 시공 방법의 선정, 공사와 활동의 평가, ③ 사업 실시 장소와 인근 지역의 자연 환경·경제·사회 환경의 현황 평가와 사업 실시 장소의 적합성에 관한 설명, ④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영향 예측·평가 및 사업의 환경과 국민 건강에 대한 영향 예측·평가, ⑤ 환경과 공동체 건강에 미칠 사업의 위험성 예측·평가와 위험성 관리 방법의 확정, ⑥ 폐기물 처리, ⑦ 환경과 공동체 건강에 대한 영향을 억제하는 방안, ⑧ 자문 결과, ⑨ 환경관리 및 감사 프로그램, ⑩ 환경보호시설의 건설 경비와 환경영향감소 조치의 실시 경비의 계산, ⑪ 환경보호조치의 이행조직 방안 등

4) 전략환경평가(Đánh giá môi trường chiến lược)

전략환경평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전전략·기본계획·계

27) 作本直行, 앞의 논문, 27면.

획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감소시키고 기초를 만들며, 통합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전전략·기본계획·계획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 제22항). 2005년 환경보호법에 비하여 내용과 절차가 보다 상세하게 규정되었다.

(3) 생산, 경영과 서비스에서의 환경 보호

환경보호법 제7장은 경제지구, 공업 단지, 수출 가공지구, 하이테크 파크 및 집중 공업지구, 경영·서비스 지구의 환경보호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고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경제지구의 환경보호에 있어서 경제 지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호 기반 시설공사를 정비해야 한다. 경제지구 관리 위원회는 환경보호에 관한 전문기구를 갖춰야 하며, 지구 내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의 관리기관과 협력하고 환경보호활동을 실시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제지구 환경보호활동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제65조 참조).

공업단지, 수출 가공지구, 하이테크 파크의 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국가 환경보호관리기관과 협력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활동을 검사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 수출 가공지구, 하이테크 파크의 환경보호 활동을 보고하며, 환경보호에 관한 전문기구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공업단지, 수출 가공지구, 하이테크 파크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경영투자주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① 각 지구의 활동기능 등이 환경보호 활동에 부합할 것, ② 환경기술기준을 충족하는 폐수의 집중회수 처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자동 및 연속적으로 폐수를 관측할 수 있는 폐수 유량 측정 설비 등의 시스템을 설치할 것, ③ 환경보호 의무를 위한 적절한 전문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제66조 참조), 폐수 처리 관련 시설 및 전문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업지구의 인프라를 건설하고 경영하는 투자 주체는 ① 환경보호방안의 수립, ② 환경기술 규격을 충족하는 폐수회수·처리 시스템의 정비, ③ 법률의 규정에 따른 환경관측의 실시, ④ 환경보호를 담당하는 인원 배치 등의 환경보호활동을 해야 한다(제67조 제1항).

집중 경영·서비스지구 관리위원회는 ① 환경보호방안의 수립, ② 환경기술기준을 충족하는 폐수 및 고형 폐기물 회수시스템의 정비, ③ 환경보호를 담당하는 인원 배치 등의 환경보호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제67조 제2항 참조).

공업지구 및 집중 경영·서비스지구에서의 환경보호방안의 수립과 실시, 권한있는 국가기관에 대한 환경보호업무에 관한 보고는 현급 인민위원회의 책임에 속한다(제67조 제3항 참조).

(4) 폐기물관리

현행 환경보호법에서는 폐기물관리도 대폭 강화되었다.

1) 폐기물 관리

폐기물(Chất thải)은 생산·경영·서비스·생활 또는 기타 활동에서 배출된 물질이고(제3조 제12항), 유해 폐기물(Chất thải nguy hại)은 독성·방사성·감염성·가연성·폭발성·부식성·중독성 등의 위험성을 포함한 물질을 말한다(제3조 제13항).

폐기물은 발생·감소·분류·수집·운반·재사용·재활용 및 처분의 모든 과정에서 관리되어야 한다(제85조 제1항). 또한 일반폐기물에 규정 한도를 넘는 용량의 유해 폐기물이 혼재되어 분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해 폐기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제85조 제2항).

현행 환경보호법은 폐기물관리에 대한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역, 경제특구 관리위원회의 책임을 신설하였다. 즉, 관리위원회에 관리 범위 내에서의 폐기물 수집장소를 설치하고, 폐수수집·처리시스템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제89조 참조).

2) 유해폐기물 처리 업무의 신청서류작성, 등기, 유해폐기물 처리허가 발급(제90조)

유해폐기물 배출자는 성급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에 유해폐기물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은 단체·개인은 유해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

한편, 현행 환경보호법은 유해물질의 목록을 작성하고 유해물질처리를 허가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원환경부를 규정하여(제90조 제3항), 성급 기관은 더 이상 유해물질 처리허가를 할 수 없게 되었다.

3) 폐수관리

폐수는 환경 기술 규격에 적합하게 수집·처리되어야 한다. 규정 한도를 넘는 유해 물질을 포함한 폐수는 유해 폐기물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IV. 베트남 사례의 시사점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이후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해 왔으며, 특히 경제면에서는 우리 나라의 베트남 현지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2015년 6월까지의 對 베트남 누적 투자는 9,849건(신고건수 기준)에 20,635,731,317달러(신고금액)이다.²⁸⁾ 그리고 베트남

28) 한국수출입은행 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 (2015. 9. 20. 방문).

남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양국의 경제 교류는 더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베트남의 환경정책 변화와 환경법은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베트남 환경정책의 변화와 환경법제의 변화 추이는 해외투자 리스크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이 포함된 이른바 CLMV(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는 환경법에 있어서 동남아시아국가 가운데 후발그룹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의 최근 환경보호법의 개정 방향과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법의 발전단계에서 2단계에 해당하는 공해법적 성격은 적어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

보호법’이라는 하나의 독립법으로 제정되어 있고, 환경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환경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처방안을 담고 있다.²⁹⁾ 따라서 3단계의 환경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그리고 베트남이 CLMV를 선도하고 있고, CLMV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베트남의 환경법과 환경정책이 적어도 CLMV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재 열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29) 환경법의 발전단계에 대해서는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제7판, 박영사, 2015, 21면 이하 참조.

참고문헌

-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제7판, 박영사, 2015.
 이재열, 베트남 법규규범문서 법제에 관한 소고, 2012년도 통합법제연구보고서, 법제처, 2012.
 최철영, 환경보호법제 비교연구, 법제연구원, 1999.
 ジェトロ・ハノイ事務所, 改訂環境保護法(2015. 01. 01施行)等の環境法規の動向について, 2015.
 作本直行, “アジア環境法 - 東南アジアの環境法政策を中心に -”, 아시아의 환경법정책과 일본, 商事法務, 2015.
 Revised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Vietnam Law & Legal Forum, 2014. 11.